

## 중재사례로 본 언론침해 실태

양삼승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1. 서언

1.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직무를 시작한 이래 1991년 10월 31일까지 10여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총수는 합계 854건에 이르고 있다. 위 854건의 내역을 각 연도별 및 매체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은 바 위 통계표에 의하면, 접수된 사건의 수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평균 50건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9년 이래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989년 121건, 1990년 159건, 그리고 1991년에는 10월말 현재 145건의 접수건수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접수건수의 위와 같은 급격한 증가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일응의 추측으로는 제 6공화국 이래 민주화 열풍에 따라 언론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급신장과 1989년부터 행해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2. 한편으로 위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854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표 2)와 같은 바,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처리결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취하」로서 40.6%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불성립」이 29.9%, 그리고 「합의」가 2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위 처리결과 중 「취하」의 경우에는 추측컨대 취하사건의 상당부분은 언론기관이 정식의 반박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이외에, 편법으로서 속보를 게재해 준다는가, 또는 정정보도신청인에게 유리한 다른 기사를 보도해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와 같은 변칙적인 처리방법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표 1> 매체유형별대상

(1981. 3. 31-1991. 10. 31)

구분 연도	신문	통신	방송	주간신문	월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기타	신청건수
1981	34	4	2	2		2			44
1982	19	2	13	3		9	4		50
1983	47	5	4	6	1	6	2		71
1984	27	1	10	5		5	6		54
1985	41	6	1	5	1	4	1		59
1986	21		5	4		9	10		49
1987	20	3	5	4		7	7	1	47
1988	38	1	4	5		1	6		55
1989	81	4	18	11		1	6		121
1990	107	2	13	23		1	13		159
1991	96	1	5	16	2	12	13		145
계	531 (62.2%)	29 (3.4%)	80 (9.4%)	84 (9.8%)	4 (0.5%)	57 (6.7%)	68 (7.9%)	1 (0.1%)	854 (100%)

<표 2> 처리결과

(1981. 3. 31-1991. 10. 31)

구분 연도	합의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신청건수
1981	9	12	1	2	20		44
1982	19	19		2	10		50
1983	21	22	1	1	26		71
1984	12	29	3		10		54
1985	12	28	4		15		59
1986	14	10	1		24		49
1987	10	9	1		27		47
1988	16	12		1	26		55
1989	29	35		6	51		121
1990	42	43	1	2	71		159
1991	38	36	3		67	1	145
계	222 (26.0%)	255 (29.9%)	15 (1.8%)	14 (1.6%)	347 (40.6%)	1 (0.1%)	854 (100%)

<표 3> 침해유형별

(1981. 3. 31-1991. 10. 31)

연도	유형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 (재산)	저 작 권	계
1981	23	15	6	44
1982	41	9		50
1983	58	13		71
1984	39	12	3	54
1985	44	15		59
1986	25	24		49
1987	39	8		47
1988	36	19		55
1989	37	34		121
1990	136	23		159
1991	128	17		145
계	656 (76.8%)	189 (22.1%)	9 (1.1%)	854 (100%)

따라서 앞으로는 언론사측에서 정정보도 내지는 반박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에 임하려는 자세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3. 다른 한편으로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있어서 문제로 된 침해대상 권리의 유형별로 이를 분석해 보면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예 또는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가 7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용권 즉 재산권에 관한 것이 22.1%이며 나머지 1.1%는 저작권에 관한 것이었다.

기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한 통계분석을 행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전국의 각 지역별 사건접수현황 및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법원에까지 제소된 사건의 수 그리고 법원에서의 사건처리방법에 따른 현황(인용, 기각, 각하, 화해, 취하 등)에 대한 총계가 있으나, 이는 문자 그대로의 통계적인 의미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에서의 인용은 생략한다.

## II. 언론침해유형의 분석방법

앞에서 1981년 3월 31일, 이래 1991년 10월 31일까지 사이에 접수된 합계 854건에 대한 몇 가지의 체계적인 분석방법의 예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언론에 대한 권익침해의 유형(이를 간략히 언론침해유형이라고 표현한다)을 가능한 한 상세히 분석하여, 여기에서부터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특히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어떠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게 되는가, 즉 정정보도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대명할 수 있는가의 길을 찾아보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하에서 본고에서는, 시간관계상 위 제 4건의 접수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인 1990년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15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위 159건의

정정보도사건이 「어떠한 원도」로, 즉 「언론기관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된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중재신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의 사례분석의 의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가 청구되게 된 언론기관의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 사례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작업의 편의상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1990년도분만을 참고로 하였고, 기타 원래의 보도의 원문이라든가 신청서의 원문 등은 참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언론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은 당연히 보도내용의 철저한 사실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진실성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언론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내용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정정보도청구가 신청되었는지」의 문제만을 간추려서 정리하였다.

즉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보도가, 어떠한 자료 또는 근거에 기하여 보도되었을 때에 정정보도청구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가의 유형을 분류해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언론의 보도가 어떠한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보는 시각 또는 분류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데에 있을 것이고, 그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연유는, 첫째, 언론기관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면서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허위내용을 보도하였든지 아니면 중과실로 이를 몰랐었는지, 아니면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나 경과실로 이를 몰랐었는지 등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로 이와는 각도를 달리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마치 존재하는 것같이 보도하였든지(여기에는 다시 전혀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와, 일부 존재하는 사실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사실의 일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치 없는 것처럼 삭제하고 보도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분류하는 사람의 시 각에 따라서는 이와는 다른 분류방법 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재신청된 사례의 분석 방법으로써 어느 하나의 논리적인 기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위 159 건의 사례를 언론침해의 재발 방지 내지는 예방이라는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언론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도를 하였을 경우에 그 보도가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되었는지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위 159 건의 사례를 언론기관의 악의성의 유무에 따라 분석해 보면, 첫째로 언론기관 스스로가 그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보도한 경우와, 둘째로 그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어떠한 사유로 언론기관

스스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을 알고 보도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전자의 위 언론기관이 악의인 경우는 다시 그 부존재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어서 스스로 확인이 용이한 경우와 피해자의 사생활이라든가 또는 사건의 심리적 등기에 관한 것이어서 외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후자의 언론기관이 선의인 경우는 언론기관이 그 보도의 부정확함을 알지 못하게 된 원인 또는 그 기사작성의 토대가 된 자료가 ① 서로 이해상반되는 당사자 가운데서 일방만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한 경우, ② 이해대립되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제보에 기초하여 보도한 경우, ③ 정확하게 취재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서 추리하여 언론기관이 약간의 보충을 하였는 바, 위 보충한 부분이 사실에 반하게 된 경우, ④ 그리고 경찰·검찰 등 공적 악사기관에서 수사하였거나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된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위와는 다른 유형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의견진술이 나 또는 도형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해 온 경우가 있었다.

이하에서 위 각각의 유형에 대한 좀더 상세한 검토를 하여 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미리 언급하여 둘 것은, 위 159개의 사안을 위 분류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시각에 따라 분류의 유형이 달라질 소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도의 원인이 이해대립되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제보에 근거한 것인지의 분류는, 그 구체적 사안의 보도근거를 확인함이 없이 오로지 위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상황만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 양자의 분류는 본고의 취지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완전한 상태대로 위 자료에 따라 일응 분류해 보기로 한다.

### Ⅲ. 언론기관이 악의인 경우

#### 1. 객관적 사실에 관한 악의인 경우

1) 이는 언론기관 스스로가 어떠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같이 보도하는 경우이다.

2) 1990 년도의 중재사례 159 건 중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2 건이 발견되었다.

즉 1 건은 어느 여성월간지에서 『출근길 남편 김 새게 하는 말, 힘 나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하에 셀러리맨 남편 22 명의 앙케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도 역시 조사된 것으로 하여 사진과 직장명을 밝히고 그 응답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잡지사의 기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마흔인 자신을 결혼 1 년이 지난 유부남으로 보도하였다 하여 정정보도를 신청하였다(90 서울중재 82 사건).

다른 1 건은 역시 경제관계의 어느 월간지에 『정계개편 이후의 경제질서』라는 제목하에서, 신청인이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러 나 신청 민은 위와 같은 논문을 위 잡지에 기고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와 같은 논문게재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이름으로 위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주장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하였다(90 서울중재 39 사건).

3) 위 두 사건의 경우에는 각 잡지사가 모두 신청인을 조사하거나 또는 신청인의 기고 없이 보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정정보도를 하기로 약속하고, 후에 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과 같이 전혀 존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언론기관 스스로가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실제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정정 보도의 문제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뻔뻔스러운 행위가 언론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울 뿐이며, 만약 이와 같은 추한 모습을 일반국민이 많이 알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통한 민주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와 같은 형태의 언론침해는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가혹할 정도의 손해 배상액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분의 제재를 받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위 두 건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관이 여론형성에의 기여도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는 월간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 2. 주관적 동기 · 사생활에 관한 악의인 경우

1) 이는 보도의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이거나 또는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 심리적·주관적 동기에 관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외부로부터 타인이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기관 스스로가 이러한 점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 해하게 된 경우이다.

2) 위 159 건 사례 중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6 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중에서 3 건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3 건은 행위의 「동기」에 관련된 것이었다.

즉 전자의 예로서는 ① C 라는 사람의 여성편력을 보도하는 기사 중에서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으로 FE 여대 부속병원 방사선과 레지던트 K 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기사가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3 명의 여자 레지던트 가운데 K 로 시작하는 이름은 신청인 밖에 없어,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90 서울중재 9 사건), ② 인기 농구선수인 K 씨의 간통사건을 보도하면서, 위 K 씨가 간통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K 씨의 부인과 K 씨의 어머니와의 사이가 나빠져서 고부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되어 K 씨와

그 부인간의 사이도 자연히 나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K 씨가 간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되자, 신청인인 K 씨의 부인이 K 씨의 간통의 원인은 위와 같은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K 씨의 복잡한 여자관계 그 자체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90 서울중재 12 사건), ③ 현직 국회의원인 C 씨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국회의원 「C」 「나와 관련된 (여성스캔들) 그 전모를 밝힌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 국회의원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20 대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자, 위 국회의원은 위 기사는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위 잡지의 기자와 인터뷰조차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90 서울중재 87 사건).

다음으로 후자의 예로서는, ① 어느 일간지에 『「혈액형 오판」 이 세 식구 죽음 불렀다』 라는 제목하에, 남편이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결과로, '아들의 혈액형이 다른 점에 관련하여 부인을 의심 하였기 때문에, 부인 및 두 자녀가 함께 자살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유일한 생존자인 위 남편은, 수사결과 자살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최소한 혈액형의 오인이 집단자살의 동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90 서울중재 53 사건), ② 나머지 2 건은 모두, 「민방」 둘러싼 민자당 속셈 무엇』 이라는 제목하에 6 공 최대의 이권으로 불리는 민방참여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선정의 기준이 될 내심의 동기는 집권 민자당에 정치자금을 공급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는 기업을 민방참여기업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인 공보처 장관은 이와 같은 보도는 장관의 정책의지와 행정과정을 심히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0 서울중재 79 및 80 사건).

3) 위 6 개의 사안의 경우에는 그 보도의 대상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서는 외부에서 타인이 그 진실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의 동기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각별히 사실확인에 유의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연후에 보도를 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언론기관 스스로가 이를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히 추리를 가하여 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다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마치 본인이 그 진실을 털어 놓은 것같이 보도하는 것은 그 권익침해의 정도 및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IV. 언론기관이 선의인 경우

이는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보도의 당시로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자기나름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진실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보도한 경우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보도가 진실과 어긋나게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한 비만의 가능성은 앞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덜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기관이 그 사건내용을 일응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정확한 보도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의하여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해대립되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한 경우

1) 이는 언론기관이 어떠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만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동일한 자료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제공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과 객관적인 면에서 보아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위 분석의 대상이 된 159 건의 사례 중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44 건이 있는 것으로 일응 분류하였다. 그러나 위 분류는 1990년도 연차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토대로 하여, 보도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근 거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만을 간추린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제보에 의하여 보도한 경우로 분류된 사례 중에도, 그 보도의 단서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본고의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또한 위 양자 가운데 어느 편으로 분류되더라도 본고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위와 같은 분류로 만족하고자 한다.

2)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분류는 포기하더라도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비교적 잘 알려진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첫째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인데 전직 모 장관의 부인이 사기 및 사문서 위조의 죄명으로 3건이나 고소당해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자들이 그 남편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인 위 부인은 위 와 같은 보도는 오로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은 신청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고(90 서울중재 52 사건),

둘째로는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인데 TV에서 어떤 외국은행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은행원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위 은행원의 해고 등이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자, 위 은행 지점장 등이 위 보도는 역시 당사자 일방만의 주장을 근거로 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90 서울중재 60 사건),

셋째는, 「학교관계」에 관한 분쟁인데 부산의 모 학교재단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학교에서 학교의 비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의 소집도 없이 제적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학사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학교측은 위 보도가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90 부산중재 6 사건).

그 밖에도 위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로서는, 90 부산중재 7, 90 서울중재 96 내지 99, 90 충북중재 4·5, 90 서울중재 22, 90 강원중재 1, 90 강원중재 3 내지 7·19, 90 서울중재 27, 90 경기중재 1, 90 경기중재 8, 90 전북중재 1, 90 광주중재 2, 90 서울중재 91 92, 90 경남중재 3, 90 서울중재 64·65, 90 부산중재 10, 90 부산중재 4·5, 90 부산중재 2, 90 광주중재 4·5, 90 서울중재 76 사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90 서울중재 33 내지 37, 90 서울중재 61 사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3) 이와 같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중 어느 일방의 제보 내지는 주장을 근거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자칫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각별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적정은 가능한 한 반드시 반대당사자의 주장까지도 취재하여 언론기관 스스로 진실에 접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진실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위 사건의 보도를 함에 있어서, 상대 당사자의 주장도 이를 함께 요약하여 보도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서, 위 159 건의 사례 중 위 유형으로 분류된 54 건의 사례를 보면, 어느 하나 반대당사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주장을 들어 봄으로써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언론기관의 보도 및 취재의 자세에 혁신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은, 만약 언론기관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 접근하여 그의 주장을 들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이 언론기관의 위와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한 보도가 행해지게 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사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2. 제 3자인 제보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한 경우

1) 이는 언론기관이 어떤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초되는 자료를 직접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자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공할 개연성이 훨씬 적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보도는 정확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인간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부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2)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서는 위 159 건의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71 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위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너무나도 그 모습이 다양하여, 어느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세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보여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위 사례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안 몇 가지만을 예시하고자 한다.

① 가수 송창식이 민자당 전당대회 식전행사에 출연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은 위 특정 정당의 식전행사에 참여한 일도 없고, 또한 참여 교섭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고(90 서울중재 24 사건),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성분에 따라 등급을 매겨 판매가격 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행해졌는 바, 위 입양기관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90 서울중재 15 사건),

③ 대학가의 풍속도를 묘사하면서 모 여대의 경우, 여대생들이 그 대학 입구의 여관을 강의실 드나들 듯이 출입하고 있어, 자유처녀들이 하룻밤의 밀월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위 대학 재학생들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 (90 서울중재 75 사건),

④ 교수 겸 만화가인 신청인이 만화 「자본주의 - 공산주의」 제작함에 있어서, 이는 안기부의 배후조종으로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90 서울중재 74 사건).

그 밖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으나, 이는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고의 다른 유형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사례는 모두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틀림이 없다.

3) 비율적으로 보아, 언론기관의 오보가 행해지는 경우, 그 오보의 원인이 언론기관이 악의적으로 오보를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언론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이해 대 링 당사자의 한쪽만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오보 원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오보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사안의 다양성에 비추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다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언론기관은 비록 제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반드시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접근하여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리 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으로써만 비로소 진실에 근접 하는 보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정정보도청구의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사소한 「착각」 또는 부주의한 「추측」에 기인한 경우

1) 이는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가 언론기관 스스로의 사소한 착각이나 부주의하게 추측하여 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야기된 경우이다.

2)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면 위 159건의 사례 중 20건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들도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오보의 내용을 쉽게 세분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의 예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축협회장이 중개인회장을 임의로 임명함에 대한 반발이 생겨, 「12 일째」 거래가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거래중단은 「12 일 동안」이 아니라 「12 일 하루 동안」 4 시간에 걸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었고(90 광주중재 1 사건),

② 전국택시노련 상임위원장이 망년회 귀가길에 승용차 운전 중 사고가 나서 3 명이 사망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는 「망년회 귀가길」이 아니라 「임시대의원대회 참가 후 귀가길」이라고 주장하였고(90 서울중재 1, 2 사건),

③ 「변호사의 운전사」가 불법영업 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운전사가」, 「변호사의 승용차로」 불법영업 한 것으로 잘못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90 부산중재 1 사건).

그밖에도 90 서울중재 40 내지 43, 90 충북중재 1, 90 서울중재 8, 90 서울중재 21, 90 충북중재 2, 90 서울중재 17·18, 90 서울중재 43, 90 서울중재 30-31, 90 충남중재 1, 90 충북중재 2, 90 부산중재 12 사건 등이 위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들이다.

3) 위 사례들을 보면, ① 12 일을 「12 일째」로 잘못 보도하였거나, ② 교통사고 일자가 12 월 29 일이고, 사고장소가 온천지인 수안보인 것에 현혹되어 만연히 모임의 성격을 「망년회」라고 단정하였으며, ③ 변호사의 운전사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부터 추리하여 「변호사의 승용차」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보도한 데에 잘못된 보도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언론기관이 그 보도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4.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보도할 경우

이는 언론기관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를 보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위 수사의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보도 자체도 오보로 되게 된 경우이다.

위 159 건의 사례 중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9 건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알려진 사례로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신청인이 남대문 시장내의 남의 점포 앞에 불법으로 노점좌판을 설치하여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 좌판을 치워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왔으나, 그 금액이 6 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언론기관은 일제히 위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얼마 후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수사결과 위 사실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신청인이 무혐의의 처분을 받게 되자, 정정보도의 신청을 하게 된 사례이다(90 서울중재 67 내지 71 사건).

그밖에 90 서울중재 103, 90 대구중재 2, 90 서울중재 94, 90 서울중재 38 사건도 역시 위 유형에 해당되는 사안들이다.

위와 같이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언론기관에 대하여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얻은 사실보다도 더 이상의 사실을 취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지는 점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위 반박권의 제도라는 것은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언론기관의 오보에 대한 고의, 과실 등 잘잘못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박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본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박권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V. 본안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

지금까지 살펴 본 바는 모두 보도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그 오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몇몇의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이전의 단계에서 다른 법리에 의하여 해결된 사안이 있었다. 이는 다시 다음의 2 가지로 나뉘어진다.

### 1.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보도의 내용이 「사책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는 ① 의견의 진술인 경우(90 서울중재 16 사건 : 이는 교수가 「시론」이라는 칼럼란을 통하여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야당 의원을 비판한 사례이다 ; 또한 90 서울중재 11 사건도 위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일기예보지도상의 북한지역이 작게 그려진 것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사안(90 서울중재 29 93 사건), ③ 반박문에 대하여 다시 정정보도의 청구를 해온 경우(90 서울중재 81 사건) 등 5 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 2. 정정보도청구의 해당자적격이 없는 경우

정정보도의 청구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리하여 중재사례에 나타난 예를 보면, 수협회장을 선거할 당시 수협회장이 단위 조합장에게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보도가 행해진 경우에 신청인들은 위 「금품살포에 관계되었다고 보도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해 왔으므로 이 청구는 이유없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90 서울중재 62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몇몇의 중재사례에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 제주도의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억지로 관광요정에 안내한다는 보도가 있는 경우에, 정정보도의 신청인으로 그 운전사 개인이 아니라,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신청인이 되어 정정보도의 청구를 하고 있는 바(90 제주중재 1 사건), 이와 같이 조합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직접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는 좀더 상세한 검토를 요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 VI. 맺는 말

1. 지금까지 1990 년도의 중재사례를 토대로 정정보도의 신청이 들어온 사례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오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오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이 어떠한 점을 유의·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언론기관에서 오보를 방지하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대 당사자를 추적·조사하여 공정한 중립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위와 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가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론기관은 어떠한 일응의 기준 내지는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으로서는 앞에서 고찰한 바에 따른 결론으로서, ① 보도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위의 동기 등 내면적 심리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거치고, ② 제보의 당사자가 대립된 이해관계자의 당사자 중의 1 인인 경우에는 반대당사자의 주장도 역시 확인하여야 하며, ③ 제 3 자가 제보자인 경우에도 역시 가능한 한 본인의 확인을 거친 후에 보도할 것이고, ④ 확정적인 사실에 기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혹시 사소한 실수가 개입되거나, 부주의한 추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다음으로 위 159 건의 중재사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보도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히 되었다. 즉, 첫째로 보도의 결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보도의 결과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특히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회사의 신용이 순식간에 무너져 도산해 버리는 사례 또한 결코 드물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둘째로, 보도된 내용이 센세이셔널 하거나, 사회의 일반통념상 지극히 희귀한 사건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례 중 남편이 혈액형을 잘못 아는 바람에 세 모녀가 자살하게 되었다는 보도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3. 끝으로 언론침해사례의 분석방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점에서 가장 오보의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언론기관의 오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법학박사), 동일 괴팅겐대학 연수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저술 : 가정적인 인간관계외 다수
-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 부장